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 회칙에 의거,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시설물(골프장 및 부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는 명량하고 질서 있는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의 성립은 포론트에서 입장명부를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포론트에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며, 모든 이용자는 입장수속과 동시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원의 종류)
1. 본 클럽은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항상 우선하여 이용한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4. 예약취소는 예약일 5일 이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 5일 이내 취소 또는 별도의 통보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클럽에서 정한 위약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요금의 부담)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포론트에 게시하며, 회원은 동반자에 대한 입장으로 납부책임을 진다. 입장요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
2. 체세공과금
3. 골프장 사업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4. 기타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제7조 (요금의 정산)
1. 천재지변이나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그린피는 환불 정산한다.
2. 상기 조항에 관계없이 체세공과금 및 협회비 등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정시간 및 휴장)

1. 본 클럽의 휴장일과 개정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본 클럽이 정한다. 모든 이용자는 영업시간 내에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은 당일 마지막 티업시간 기준 8시간 이내로 한다.
2.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경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 최소 2일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우선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때
2. 도박을 하거나 잔행을 지연시켜 타인에게 큰 방해가 될 때
3.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4.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단, 회원의 추천장이 있을 경우 제외
5.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6.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7.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8. 기타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내장객은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 받는다.

제11조 (공중질서의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
3. 당 클럽회원은 모든 동반자에 대한 에티켓 등 품위유지 책임을 진다.

제12조 (이용의 거절)

1. 내장객은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만 이용할 수 있다.
2. 클럽의 승낙이 있을 경우는 18홀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
3. 초과이용의 경우 이용요금은 본 약관 제6조 및 제7조에 준한다.

제13조 (시설물 및 골프카 훼손 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 등 장비를 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험방지 책임과 매너의 준수)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한다.
2. 모든 이용자는 본 클럽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이용자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경기를 해야 하며, 안전 관리상 클럽 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경기자 본인이 진다.

제15조 (비거리의 확인 의무)

경기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안전한 비거리를 경기자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타구 주의 의무)

1. 스윙연습은 허가내의 지역 외에는 스윙연습을 할 수 없다.
2. 경기자는 동반한 타자 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재반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7조 (인접 홀에서의 타구)

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

구 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 우선 양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18조 (비구의 책임)

경기진행 중 경기자가 타구한 비구로 인한 재반 안전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19조 (대피의 의무)

1.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2.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0조 (낙뢰의 대피)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 (경기 보조원 등 안내 협조)

경기자는 경기보조원, 진행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일몰 시간 후 경기 금지)

1.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 종료하여야 한다.
2. 위험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골프카 사용책임)

경기진행 중 골프카로 인한 재반 안전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기타 안전사고)

1. 경기자는 경기진행 중 언뜻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위험 장소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25조 (훼손 복구의 의무)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비 발생 시는 경기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 안 된다.
-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흡연 시 퇴장 및 벌칙이 부과된다.

제27조 (휴대품의 자기 책임)

1.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목욕장 및 기타 시설 이용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포론트 또는 클럽이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2. 이용자의 휴대품 또는 귀중품의 관리에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8조 (락카의 열쇠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분실 시에는 제각실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29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0조 (승용차의 운전위임)

이용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원 및 경비원이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 (승용차의 보관책임)

이용자의 승용차는 이용자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 시에 발생한 분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2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음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3조 (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

본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4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2. 본 약관의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치며 법의 정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관청에 신고하게 된다.

제35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회사가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

제36조 (시행일)

본 약관은 당 클럽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